

부산시설공단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부산시설공단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3. 31.

1. 최종합격자(접수번호)

- 가. 시설관리원-가
2023-시설관리원_가-02
- 나. 시설관리원-나
2023-시설관리원_나-03
- 다. 요금정산원
2023-요금정산원-01

2. 예비합격자(접수번호)

- 가. 시설관리원-가
2023-시설관리원_가-01
- 나. 시설관리원-나
2023-시설관리원_나-01

3. 최종합격자 등록

- 가. 등록기간: 2023. 4. 3.(월) ~ 4. 5.(수) 18:00까지
※ 등록기간 내 합격자 미등록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나. 등록장소: 부산시설공단 ▷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(연지동)
- 다. 제출서류 ▷ 최종합격자 발표공고일 이후 발행분(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)
 -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(재학증명서 포함)
 -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변동이력 포함)
 - 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 - ④ 주민등록등본 2통
 - ⑤ 사진(3×4, 상반신 탈모) 5매

⑥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통 [붙임파일참조]

※ 예시내용을 지운 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해당 사항 없음'을 기재하여 제출

※ 재직 중인 친인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⑦ 부산시설공단 신규임용자 서약서 1통 [붙임파일참조]

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통 [붙임파일참조]

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[붙임파일참조]

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
⑪ 장애인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통(해당자에 한함)

⑫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(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)

4. 합격자 준수사항

가. 최종합격자 등록 시 합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.

※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인사노무팀(051-860-7661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임용됩니다.

다.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.

라.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미충족 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.

마.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부산시설공단 채용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바. 기타 문의 사항은 인사노무팀(☎051-860-7661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5. 예비합격자 안내사항

가. 예비합격 유효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

※ 유효기간 내 임용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
나. 예비합격자의 임용사유

- 임용포기, 자진 퇴사 등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

다.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방법: 유선통보(입사지원서에 등록된 연락처)

※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

※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 시 **051-860-7661**로 연락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유의사항

-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.

- 예비합격 유효기간 내 연락이 가지 않을 시 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합격 처리됩니다.

- 연락 불가에 따른 책임은 예비합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6. 공단 임용 결격사유

■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「아동·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9.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
10.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